

4-5-6 등록금 미납자 처리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예수대학교 학칙 제22조 및 제29조 7호에 의거하여, 소정의 기간 동안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의 지도 및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할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3.2.28.>

제2조(정의) ① "매학기 소정기간"이란 매 학기 개시 전, 학교에서 지정한 수업료 납부 기간을 말한다.

② "소정액의 수업료"란 해당 학기 등록을 위해, 매 학기 개시 전, 학교에서 정한 일정의 금액을 말하며, 장학생 선발 등 기타 학비감면에 해당되는 자는 감면 금액을 제외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등록금 미납자 처리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4조(수업료 납부기간 결정 및 고지) 수업료 납부 기간은 매 학년도 개시 전에 결정·공시하고, 매 학기 수업료 납부기간 2주전까지 등록 대상자의 주소지에 우편물로 발송하며, 대학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게시한다.

제5조(추가등록기간) 제4조의 기간 동안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, 총장은 일정 기간을 정해 추가로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.

제6조(등록 연기 신청 및 분납) ① 소정의 기간 동안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,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소정의 양식을 통해 등록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. 단, 등록연기신청기간은 학기의 1/4을 넘지 못한다.

② 미등록자의 편의를 위해, 수업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고, 분할 납부를 하려고 하는 자는 소정의 양식을 작성,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분할납부기간은 학기의 1/4을 넘지 못하며, 3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.

③ 분할 납부 방법은 학교에서 지정한 방식으로 한다.

제7조(고지의무) ① 추가등록기간까지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, 추가등록기간 만료 후 1주일 이내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수업료 미납 사실과 이로 인한 제적 대상임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,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에게도 즉시 고지하여 필요한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3.2.28.>

② 제5조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기의 1/4까지 등록이 완료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제적 대상임을 고지하여야 하며, 이를 해당 지도교수에게 고지한다. <개정 2023.2.28.>

제8조(미등록자의 이관 및 조치) ① 사무처는 학기의 1/4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미등록자와 보호자 면담을 통해, 등록의사를 확인하고, 해당결과를 교무처에 이관한다.

②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는 학기의 1/4이 초과하여 학기의 1/2까지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단, 등록금의 1/2금액을 학기의 1/4까지 사무처에 납부한 자에 한한다.

다.

제9조(제적처리) ① 교무처에 학기 1/2까지 등록을 마치지 못한 자는 학칙에 따라 제적한다.

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학업의 계속 의사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,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0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